



정보통신안테나

## 정보통신안테나

### 공포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개정령
-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

### 고시

- 전산망에 대한 국가표준

### 입법예고

-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안)

### 공포

◎ 대통령령 제14,276호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령

(공포일 94.5.30)

### 개정이유

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의 완화 등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법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전기통신업과 연구 및 개발업 등을 추가함. (제3조)
-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의 기사 2급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연구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완화함. (제14조 제3항)
- 특정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기준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4조 제5항)

– 주무부장관이 국산기술제품에 대한 지원조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령 제26조)

◎ 대통령령 제14,275호

##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

### 규정

(공포일 94.5.30)

#### 제정이유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등의 심의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위원회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소요재원의 조달 및 기술의 개발·도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함(령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령 제3조).

다.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령 제7조).

라. 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용과 관련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

을 설립·운용하도록 함(령 제8조).

마. 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의 지원 및 이용과 관련한 분야별 관련제도의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주요부처에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령 제9조).

바. 위원회 및 업무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령 제10조).〈법제처 제공〉



#### 고시

◎ 체신부고시제 1994-37호

## 전산망에 관한 국가표준

(고시일 94.5.28)

① 사용자 데이터그램 규약표준(UDP)

② 단순 파일전송 규약표준(TFTP)

③ 정의영역 이름 규약표준(DNS)

④ 주소해결 규약표준(ARP)

⑤ 역 주소해결 규약표준(RARP)

⑥ 인터넷 제어메시지 규약표준(ICMP)

⑦ 인터넷 그룹 다중전송 규약(IGMP) 표준

⑧ 외부 게이트웨이 규약(EGP) 표준

⑨ 전자우편 메시지 형식(MAIL) 표준

⑩ 게이트웨이 요구사항 표준

## 입법예고

◎ 체신부공고제 1994-67호

###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안)

(공고일 94. 4. 30)

#### 제정취지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1993. 12. 27. 법령 제4, 650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감청설비에서 제외되는 설비를 전기통신사업 및 전파관리에 사용되는 설비, 전기용품중 전자응용기계·기구류 등으로 정함.
- 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해 고등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제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고등 검찰청의 검사에게 허가청구를 신청하도록 함.
- 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통신제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제출하고, 국가안전기획부장은 그 계획서를 종합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함.
- 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특히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승인을 얻도록 하되, 사후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결과를 폐기하도록 함.

- 마. 정보수사기관의 장, 검사, 사법경찰관 등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은 자는 집행과정에서 얻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함.
- 바. 정보수사기관의 장등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서 등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분증표를 제시하도록 함.
- 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체신관서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일반통신 사업자로 정함.
- 아. 정보수사기관의 장,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경위 및 취득한 결과의 요지를 조서로 작성하고 비밀보호 및 훼손·조작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자. 감청설비를 인가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체신부장관은 인가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목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인가하도록 함.
- 차. 전화협박 방지를 위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당해 역무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동 역무를 제공하도록 함.
- 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하여는 법이나 이 영에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